제269회(임시회) 제2차본회의 2008년 4월 24일 (목)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

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

<u>2008. 4. 24.</u> 행정자치위원회

I. 심사경과

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8년 4월 7일
이필용 의원 외 6인
(이필용, 강태원, 박재국, 연만흠, 김환동, 조영재, 이종호)

2. 회 부 일 자 : 2008년 4월 11일

3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269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(2008. 4. 21)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)

Ⅱ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필용 의원)

1. 제안이유

- 가. 충청북도 도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관련규정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법규 체계상의 문제점을 시정 하고,
- 나. 보다 활발한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,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도정시책을 발굴하는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 및 제안의 종류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나.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(안 제12조)
- 다. 채택여부의 결정(안 제18조)
- 라. 창안의 등급(안 제21조)
- 마. 창안에 대한 부상금의 지급 (안 제22조)
- 바. 인사상 특전 (안 제24조)
- 사. 창안의 사후관리 (안 제27조부터 제30조)

Ⅲ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)

- O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주민들에 의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이후,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무 엇보다도 강조되어 왔음.
- O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, 우리도의 경우에는 도민들이 직접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안 제도 관련규정이 조례가 아닌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법규 체계상의 문제점이 있었음.
- 주민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방행정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안제도는 이상적인 지방자치 실현방안임을 고려할 때, 당연히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 하다고 할 것이며,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.

O 아울러, 본 조례안의 내용 또한, 제안제도 운영전반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며,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, 그 내용상에 이견이 없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략"

V. 토론요지: "생략"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Ⅶ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※ 붙임: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관하여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, 행정의 능률화및 업무혁신을 기하고,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'제안'이란 도민 또는 충청북도 및 시·군 소속 공무원이 충청북도지사 (이하 '도지사'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.
 - 2.'창안'이란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.
 - 3.'실행'이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**제4조(제안의 종류)**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도민제안, 공무원제안, 추천제안 으로 구분하고, 제안방식에 따라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.
 - 1. 도민제안 :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제출하는 제안
 - 2. 공무원제안 : 도 및 시·군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
 - 3. 추천제안: 도내 시·군에서 심사 채택된 제안 또는 실행중인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·군수가 추천하는 제안
 - 4. 자유제안 :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
 - 5. 지정제안 : 도지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

- 제5조(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.
 - 1.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
 - 2. 특허권·실용신안권·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」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
 - 3.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
 - 4. 단순한 주의환기·진정·비판·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 - 5. 도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

제2장 제안의 제출 등

- 제6조(제안의 제출) ① 도민과 충청북도 및 도내 시·군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.
 - ② 자유·지정제안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·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추천 제안은 시장·군수가 제출한다.
- 제7조(제안의 공동제출)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야 한다.
- 제8조(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) 도지사는 도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,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·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9조(제안의 접수) ①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 제안자의 요청에 의하여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아니한다.
 -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.

- 제10조(제안의 보완)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 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완에 소요 되는 기간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제11조(제안의 활성화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자유롭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 도록 도 홈페이지에 제안사이트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상아이디어 모집, 상상토론의 날 운영 등 홍보행사를 할 수 있다.
 -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.

제3장 제안심사위원회

- 제12조(제안심사위원회)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 의 결정, 부상금의 지급액, 제안의 실행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제안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설 치 · 운영한다.
 -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.
- 제13조(전문위원)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 -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행, 평가에 관하여 해당분야의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 촉한다.
 -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 한 자료를 수집 및 조사 · 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.
- 제14조(실무위원회)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위 원회를 구성 · 운영하되,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② 실무위원회에서는 제안내용이 제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 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.
- 제15조(수당)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수당지급은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장 제안의 심사

- 제16조(심사구분) 도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은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.
- 제17조(심사기준 등)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.
 - 1. 창의성
 - 2. 능률성 및 경제성
 - 3. 계속성
 - 4. 적용범위
 - 5. 노력도
 -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(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)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8조(체택여부의 결정)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·결정하고,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충청 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 금 실행계획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의견조회 등)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·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도지사는 제안이「특허법」·「실용신안법」·「디자인보호법」또는 「저작권법」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

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실무위원회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.
-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·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제20조(불채택 제안의 재심)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

- 제21조(창안의 등급)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·은상·동상·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. 다만,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,「상훈법」·「정부표창규정」·「지방공무원법」및「모범공무원규정」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·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.
 - ③ 창안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, 충청북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22조(부상금의 지급) ① 창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도민의 경우 최고 5백만 원으로, 공무원의 경우 최고 3백만원으로 하며 창안의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.
 - ②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.

- 제23조(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)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 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,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.
- 제24조(인사상 특전)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행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,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② 도지사는 제안자가 인사상 특전 대상자에 해당하나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시장·군수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권고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의 권고를 받은 시장·군수는 제 안자에 대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5조(그 밖의 보상) 도지사는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 다.
- 제26조(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) 도지사는 창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「특허법」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「실용신안법」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「디자인보호법」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.

제6장 창안의 사후관리

- 제27조(관리기간) 도지사는 창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 로부터 3년간 실행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,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28조(창안의 수정 및 보완) 창안이 직접 실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·보완하여 실행할 수 있다.
- 제29조(실행의 권고) 도지사는 창안이 다른 기관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행을 권고할 수있다.

- 제30조(실행성과의 평가) ① 창안을 실행하는 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② 실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행 및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31조(규칙)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관 련 법 령

□ 지방 공무원법

- 제39조의3 (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)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.
 - 1.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
 - 2.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
 - 3. 제78조의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절감 등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
- 제78조 (제안제도) ①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.
 - ②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 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.
 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고 기타 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□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

- 제31조(국민제안의 처리)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·처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공무원 제안규정

제30조 (지방공무원 등의 제안)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하게 할 수 있으며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'시·도지사'라 한다)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교육 (이하 '시·교육감'이라 한다)에게 제안의 심사결과 우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할 수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·도 교육감이 정부에 제안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국민제안규정

제4조 (국민제안의 제출) ①모든 국민은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·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국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,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·우편·모사전송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(이하 '온라인국민참여포털'이라 한다)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